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자치안전과-18195 |
| 등록일자 | 2019. 08. 29 |
| 결재일자 | 2019. 08. 29 |
| 공개여부 | 대국민 공개 |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민방위팀장 | 자치안전과장 | 행정안전국장 |
| 오은교 | 선봉주 | 정일연 | 2019. 8. 29. 김덕 |
| 협조 | 자치행정팀장 장우연 | | |



-안전·안보 지킴이 44년, 생활속의 민방위-
제44주년 「민방위대 창설」 기념행사 계획

2019. 8.

행정안전국
[자치안전과]

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계획

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을 맞이하여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관계자 노고 치하 행사를 통하여 민방위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방위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I 추진 근거

- 제44주년 서울시 민방위 창설기념행사계획(서울시민방위담당관-12208, 2019. 8. 19.)
※ 민방위대 창설일 : 1975. 9. 22.

II 추진 방향

- 최근 국내.외 외교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 추세를 고려, 민방위의 필요성 및 민방위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 마련
-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을 통해 민방위대 위상을 정립하고 굳건한 국민 안보·안전 의식 고취
-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수여를 통해 관계자 노고 치하

III 세부 계획

1. ▣ 창설기념식 행사

- 일 시 : 2019. 9. 23.(월) 10:30
- 장 소 : 기획상황실(본관 6층)
- 참석대상 : 약 50명
 - 구청장, 행정안전국장, 자치안전과장
 -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
 - 민방위 유공 표창 수상자 등

※ 참석대상은 전원 민방위복 착용(군인·경찰·소방은 제복 착용)

○ 행사순서



② 민방위 유공자 표창 수여계획

- 일 시 : 2019. 9. 23.(월) 창설기념식 時
- 표창훈격 : 구청장
- 표창대상
 - 민방위 통대장(동별 1명 이상), 민방위대원, 군 관계자, 경찰 관계자, 소방 관계자, 민방위 담당 공무원, 기타 등
- 표창 추천방법 및 자격요건 : 붙임-2 참조

③ 市 창설 기념행사 시 여성 민방위 대원 경진대회 참석

- 일 시 : 2019.9.19.(목) 15:00~17:00
- 장 소 : 서울시청 본청 8층 대
- 인 원 : 은평구 여성 민방위 대원 4명
- 내 용 : 심폐소생술(1명), 응급처치(3명)
- ※ 전문강사 초빙 교육(2회) 실시

④ 민방위대 창설 홍보

- 인터넷 활용하여 홍보 : 구 홈페이지 게시
- 플래카드 및 입간판 게시
- 민방위 가로기 게양(서울시 계획에 의거)
 - 게양기간 : 2019. 9. 18.(수) ~ 9. 25.(수)
 - 게양구간 : 관내 주요 간선도로 10개 구간

IV 소 요 예 산

□ 소요예산 : 금1,098,000원

○ 표창장 제작 비용 : 금298,000원

- 산출기초 : 8,500원×35매=298,000원
- 예산과목 : 재난대비 민방위 활성화, 생활민방위 확대,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, 일반운영비(201), 사무관리비(01)

○ 다과류 준비 : 금100,000원

- 산출기초 : 다과류 100,000원
- 예산과목 : 재난대비 민방위 활성화, 생활민방위 확대,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, 업무추진비(203), 시책추진업무추진비(03)

○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: 금200,000원

- 산출기초 : 10,000원×10매×2명=200,000원
- 예산과목 : 재난대비 민방위 활성화, 생활민방위 확대,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, 포상금(303), 포상금(01)

※ 은평구 공무원 표창 수상자 2명 부상

○ 여성경진대회 강사료 : 금500,000원

- 산출기초 : 교육 2회(2시간씩)×250,000원=500,000원
- 예산과목 : 재난대비 민방위 활성화, 생활민방위 확대, 민방위 교육, 일반보상금(301), 기타보상금(12)

V 행 정 사 항

□ 표창대상자 추천 : 2019. 9. 2.(월)까지 추천

- 공적심사 : 표창대상자 선발은 은평구(모범시민)공적심사 기준에 의거 엄정 심사

□ 행사참석 시간 준수

- 표창수상자 : 행사당일 09:40까지 행사장 도착
- 행사참여자 : 행사당일 10:00까지 행사장 도착

- 붙 임 1. 구청장 표창 추천방법 및 자격요건 1부.
2. 공적조서 서식 1부. 끝.

[붙임-1]

구청장 표창 추천방법 및 자격요건

1. 표창(공적) 추천기준(일) : 2019. 8. 31.

- 민간인 : 민방위 통대장, 군.경.소방 관계자로서 민방위·을지연습 분야에
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, 기타 민방위 업무분야 유공자
 - 민방위 통대장 : 민방위 통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 - 군인(군무원) : 소속 부대에서 민방위·을지연습 관련 업무를 맡은지 6
개월 이상인 자
 - 경찰(소방) : 소속 기관에서 민방위관련 업무를 맡은지 6개월 이상인 자

- 공무원
 - 국가관, 공직관, 사명감이 투철하고 성실·창의적이며 공·사생활이
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
 - 표창추천 기준일 현재 민방위분야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민방위
업무 발전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자
 - 민방위대 조직관리와 교육·훈련에 공이 있으며 적극적인 자세로
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자

2. 표창 추천제한

- 민간인
 -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,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기간이 경과되지
않은 자 등 형사처벌을 받은 자
 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
사업장과 그 임원 등
 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 -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청장
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는 자
 - 추천일 기준 민방위·을지연습 관련 공적으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

□ 공무원

- 재직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
 - ※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,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천 가능
-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,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
- 추천일 기준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

3. 추천시 제출서류

- 민간인 : 공적조서 1부(붙임-2)
- 공무원 : 공적조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각 1부(붙임-2)
 - ※ 인사기록요약서 : 『e-인사마당』에서 확인

4. 공적조서 기재 및 확인

- 통대장 : (조사자) 담당주사 확인, (추천관) 공적조서에 동장 직인 날인
- 민방위대원, 경진대회 참가자 : (조사자) 민방위팀장 확인,
(추천관) 자치행정과장 직인 날인
- 군인(군무원) : (조사자) 소속 인사장교 확인, (추천관) 부대장 직인 날인
- 경찰(소방) : (조사자) 소속 담당팀장 확인, (추천관) 경찰(소방)서장 직인 날인
- 공무원 : (조사자) 담당주사 확인, (추천관) 과(동)장 직인 날인

| 주요학력 및 경력 | | | |
|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(19) 년 월 일 | (20) 이 력 | (21) 년 월 일 | (22) 이 력 |
| | | | |
| | | | |
| 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 | | | |
| (23) 년 월 일 | (24) 내 용 | (25) 년 월 일 | (26) 내 용 |
| | 해 당 없 음 | | |
| | | | |
| (27) 공 적 사 항 |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(신명 순명조) <input type="radio"/> (휴먼명조) - | | | |